

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73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20.4.23.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재난상황에서 경제적·사회적 피해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시성 있는 지원을 위해 감채기금의 일부 조성재원을 추가경정예산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, 감채기금의 기금조성재원 중의 하나인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중 “단”을 “이 경우”로 하며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금의 재원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단,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%이상으로 한다. <단서 신설>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가. ~ 다. (생략)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제3조(기금의 재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이 경우,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